

「우월한 월급 통장」 핵심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

상품특징	▷ 본 통장으로 급여이체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2025.03.28. 현재 / 세금납부 전 기준)		
	기본금리	우대금리	
	연 0.1%	2백만원 이하 최대 연 3.0%p	
주요내용	 ▶ 우대금리(최대 연 3.0%p): 전월에 우대조건 충족시 전월 결산일부터 이번 달 결산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매일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① 전월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 연 2.0%p ② 첫급여 이체 시 가입일로부터 1년동안 우대 – 연 1.0%p 		
	 ▶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전월에 급여이체 실적 보유시 다음달 16일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우리은행 수수료 및 다른은행수수료 무제한 면제 혜택 제공 ※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함 ※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충족조건 및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세부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 뷔페즈 그스이(중이의 건스 된본 언어의 단어보		
이자지급일	▷ 매월 셋째주 금요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다음날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	또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비랍니다.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 (14.0%)+지방소득세 (1.4%))※ 적용세율은 2025.03.28.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자계산방식	▷ 이자계산 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율로 계산함-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 이자결산일 : 매월 셋째주 금요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이자지급일 : 이자결산일 익일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2915(2025.03.27~2026.12.31)

「우월한 월급 통장」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우월한 월급 통장**」

· 상품특징 : 본 통장으로 급여이체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2 거래 조건

☞ 이자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u>실제 계약 내용은</u>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표시됩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상품유형	• 저축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 해지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 개설기간 1개월 미만 계좌이거나 잔액 100만원 초과 계좌 또는 연결계좌보유 계좌는 영업점 방문 해지만 가능	
기본금리	• 연 0.1% (2025.03.28. 현재 / 세금납부 전 기준)	
상품전환	• 최초 개설일 2개월 이내의 저축예금에 한하여 이 예금으로 전환 가능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3.28.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우대금리 (2025.03.28./ 세금납부 전 기준)	• 우대금리 (2025.03.28. 기준) 전월 아래 우대조건 충족시 전임까지 기간동안 매일 최종 전홈페이지에 고시된 우대금리를 ① 전월 급여이체 ^{주1)} 실적 보유 ② 첫급여 이체 ^{주2)} 시 가입일로 ³ ※ 가입후 2개월간(급여이체 변경후 실 ※ 위금리는 조회기준일 현재 우대금리로서 주1) 급여이체 실적 : 아래 중 하나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1)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되고) 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이상인 경우 3. 급여이체 등록한 고객이 통장 적임이체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주2) 첫급여 이체 : 직전 반기 6개월동한 경우		世만원 이하의에 더하여 적용 2.0%p 동안 우대 — 연 나 기간)은 우대금 있으며 금리변동시 한 이체일이 휴역 체 여부를 확인, 처 여부를 확인,	금액에 대해 (소화대 연 3.0%) 1 1.0%p 리 기본제공 I 변동일로부터 변경 보급한 경우 일인 경우 인쇄된 이체실적 보의 직장명과 분	%p) 영된 금리를 적용 이 월 100만원 동일하게 인쇄된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 결산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산출근거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 지급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함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구 분		Ч	용	OF 1우리은행
수수료 면제	●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주1)} 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은행 수수료 ^{주2)} 및 다른은행 수수료 ^{주3)} 면제 ● 수수료 면제기간은 실적을 충족한 달의 다음달 16일부터 그 다음달 15일 까지이며,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 주1)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이 통장에 10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2. 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 "급료", "수당"이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급여이체 등록한 고객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고객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우리은형	행 수수료 ^{주2)}	다른은행 수수료 ^{주3)}	
	레뱅킹) 통한 다른 - 우리은행 자동화 현금출금 수수화 - 우리은행 자동화 은행 이체 수수	화기기를 통한 다른	- 다른은행 ATM기 이용한 현금 출금수수료 (단,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 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어 출금 시 발생수수료는 면제되 -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	·컴/ 서
	※ 면제수수료 세부사항 내 명시된 수수료만 면제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००) 우리은행	
구 분	내 용	
휴면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양도·상속 및 공동명의	• 상속, 양도 및 공동명의 불가	
담보제공	• 질권설정 및 담보 제공 불가	
판매한도	• 20만 좌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	

3 유의 사항

www.wooribank.com

- 이 통장은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전월 우대항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 전환계좌의 경우 전환 후 최초 결산기에 대해서는 전환 전(前) 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다음 결산기부터는 전환된 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 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